

장애인복지시설

[] 운영중단

[] 운영재개

[] 폐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성명	
	소재지	(전화 :)	
시 설 개 요	명 칭	종 류	
	소재지	시설장의 성명	
	중단·재개·폐지 연 월 일	중단기간	
재 산 활 용 계 획			
중단·재개 또는 폐지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운영중단·[]운영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 의 회의록 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보조금·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접 수 특별자치도·시·군·구 (시설 담당부서)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확인 특별자치도·시·군·구 (시설 담당부서)	기안 및 결재 특별자치도·시·군·구 (시설 담당부서)	회 신